

# 定 款



## 第 1 章 總 則

**第1條(設立과 名稱)** 이 協會는 火災로 인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관한 法律(以下 法이라 한다)에 依하여 設立되며 社團法人 韓國火災保險協會(이하 協會라 한다)라 稱한다. (英文으로는 Korean Fire Protection Association, 略字는 KFPA로 한다)

**第2條(目的)** 協會는 火災豫防 및 消火施設에 對한 安全點檢과 이에 關한 研究, 啓蒙을 통하여 火災로 인한 人命 및 財産上의 損失을 豫防함으로써 國民生活의 安定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.

**第3條(主事務所·支部 및 出張所)** 協會의 主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두고 釜山·大邱에 支部 또는 出

張所를 둘 수 있다.

## 第 2 章 社 員

**第4條(社員)** 協會의 社員은 保險業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火災保險事業의 免許를 받은 者로 한다

**第5條(義務)** 社員은 法 및 同施行令의 定하는 바에 따라 協會費를 負擔한다.

## 第 3 章 任 員

**第6條(任員)** 協會에 常勤理事 3人과 非常勤理事 3人을 두며 監事 1人을 둔다.

**第7條(任員의 選任과 任期)** ①任員은 社員總會에서 選任하여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.

②理事長은 常勤理事 中에서 社

員總會가 選任한다.

③非常勤理事는 協會의 社員 中에서 選任한다.

④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. 다만,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.

**第8條(補闕選任)** 任員에 關員이 생긴 때에는 前條 第1項, 第2項,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任하고 그 任期는 選任된 날로부터 前條 第4項에 規定된 期間으로 한다.

**第9條(職務)** ①理事長은 協會를 代表하며 社員總會 및 運營委員會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되며 協會의 業務를 統理한다

②理事는 理事長을 補佐하며 理事長 有缺時에는 미리 定한 順位에 따라 그 職務를 代行한다.

③監事는 協會의 業務 및 會計를 監査한다.